

의안번호	제4호
의결연월일	2023. 02. 21.

#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3년 02월 13일, 장진호 의원 외 3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02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23년 02월 21일,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장진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12조, 안 제23조)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정함(안 제28조 제4항 제9호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 5. 토론 요지 : 생략

## 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